

#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환경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	1
2.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	2
3.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	3
4.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	4
5.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확대 .....	5
6.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	6
7.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다 .....	7
8.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	8
9.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	9
10.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	11
11.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	13
12.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	14
13.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	15
14.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	16
15.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	18
16.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제조업체 공표 의무화 .....	19
17.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	20
※ 환경부 달라지는 제도 .....	21

※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환경부 생활환경과 (☎ 02-2110-7689)

-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11.1.1일부터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등은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에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석면피해구제법

☎ 석면피해구제센터([www.env-relief.or.kr](http://www.env-relief.or.kr))

##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 ▶ 추진배경 :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등을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 주요내용
  - ①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
  - ② 적용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임
  - ③ 구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임
- ▶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 2.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2-2110-6916)

-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3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그간 플라스틱 업계는 영세한 업계 현실과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의 인상 유예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 2011.1.1일부터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폐기물부담금의 중소 플라스틱 제품 제조자에 대한 부담 완화

####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 ▶ 추진배경 :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체에 대하여 3년간 폐기물부담금 50%를 감면
  - ② 폐기물부담금 대상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 기업은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budamgum.or.kr>)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 ※ 관련 증빙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사본,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등
  - ③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 ▶ 시행일 : 2011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까지)

### 3.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2-2110-6929)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10.11.10)되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제작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 그간 자치단체별로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위조방지 효과가 미미하여 전국적으로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불법 제작·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 가짜 종량제봉투 유통은 자치단체 세수입이 감소로 이어져 현재도 열악한 자치단체 청소재정을 더욱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 위조방지기술은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이며 주민들이 위조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로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

####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내용

#####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 도입 의무화〉

- ▶ 추진배경 :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 방지를 통한 지자체 청소재정 안정과 종량제의 안정적 운영
- ▶ 주요내용
  - ①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
  - ② 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
  - ③ 봉투제작 시 담당자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사용
- ▶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 4.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2-2110-6949)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이 개정되어 도안의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하고, 플라스틱 관련 도안을 한글화 하였으며 품목별 색상을 도입 하는 등 분리배출 표시가 변경됩니다.
-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03년 1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복잡한 표시방법 때문에 소비자의 분리배출 혼란과 도안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 '11.1.1일부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변경된 도안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감안하여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6월의 준비기간을 부여 하였습니다.

###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

#### 〈분리배출 표시 변경〉

- ▶ 추진배경 : 분리배출 표시 부적정 및 복잡한 표시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분리배출시 혼란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안 개선 필요
- ▶ 주요내용
  - ① 분리배출 표시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 및 한글표기
  - ② 컬러인쇄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품목별 색상 도입
  - ③ 분리배출 표시 위치를 상품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규정
- ▶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 5.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 확대

환경부 생활환경과 (☎ 02-2110-6909)

-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이 연면적 860㎡이상에서 430㎡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연면적 430㎡이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은 연면적 860㎡이상의 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정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보육시설 중 일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430㎡이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면적기준 확대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면적기준 확대〉

- ▶ 추진배경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면적 기준을 확대(860㎡→430㎡)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및 영유아 건강보호
- ▶ 주요내용
  -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 ②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연면적 기준을 860㎡에서 430㎡으로 강화
  - ③ 전국의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가능
- ▶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 6.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환경부 생활환경과 (☎ 02-2110-6812)

- 철도소음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제작시 적용되는 소음권고기준을 제정하여 2011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의 주행소음 및 정차소음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가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 철도가 국가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의 하나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주변 주민의 경우 높은 소음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등 소음측면에서는 취약했습니다.
-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의 시행으로 철도차량제작사로 하여금 자발적인 저소음 차량 연구개발 및 제작을 유도하여 철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철도주변 주민의 소음피해 저감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제작 ; 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 ▶ 추진배경 : 철도주변 주민의 소음피해저감을 위하여 철도차량제작사로 하여금 자발적인 저소음 차량 연구개발 및 제작을 유도하는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마련
- ▶ 주요내용
  - ① 기관차·디젤동차 및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에 대하여는 정차소음과 주행소음 권고기준 제정
  - ② 객차·화물열차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주행소음 권고기준 제정
  - ③ 2011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에 적용하고, 2017년에는 유럽수준까지 강화계획
- ▶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 7.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 02-2110-6875)

-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행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유해물질인 납·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조정하며, 1,4-다이옥산 항목을 신설(57개→58개 항목)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납 항목은 “0.05mg/L” 에서 “0.01mg/L”로, 비소 항목은 “0.05mg/L”에서 “0.01mg/L(샘물의 경우 0.05mg/L)”로, 망간 항목은 수돗물에 한하여 “0.3mg/L(샘물 미적용)”에서 “0.05mg/L(샘물 미적용)”로 각각 기준이 강화되고,
  -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항목이 조정(0.05mg/L)되며
  - 새로이 1,4-다이옥산 항목(0.05mg/L)이 2007.12.26. 신설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 과학적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을 확대·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기여하게 됩니다.
- 앞으로도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등 ‘국제적 수준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을 개선하고 관리’ 할 계획입니다.

###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

- ▶ 추진배경 :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현행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중 유해물질인 납·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은 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
- ▶ 주요내용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확대)
  - ① (납) “0.05mg/L”에서 “0.01mg/L”로 강화
  - ② (비소) “0.05mg/L”에서 “0.01mg/L(샘물의 경우 0.05mg/L)”로 강화
  - ③ (망간) 수돗물에 한하여 “0.3mg/L(샘물 미적용)”에서 “0.05mg/L(샘물 미적용)”로 강화
  - ④ (6가크롬) “6가크롬”은 “크롬”으로 항목이 조정 되고, 기준은 0.05mg/L로 현행과 동일
  - ⑤ (1,4-다이옥산) 새로이 신설(0.05mg/L)
- ▶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 8.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 02-2110-6680)

- 대기업·제조업에 유리하게 운영되어 왔던 녹색기업 지정기준을 기업 규모·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집니다.
- 기존의 녹색기업(舊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공통적인 내용을 적용하고, 오염물질 배출 관리 등 전통적 환경관리 영역에 초점을 두어 대기업·제조업 중심으로 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12개 업종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11년 4월 개정되는 녹색기업 운영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종들도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 ; 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 ▶ 추진배경 : 기존의 녹색기업(舊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은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참여가 어려웠음
- ▶ 주요내용
  - 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가기준 차별화
  - ② 전기·전자, 기계·자동차, 금융, 숙박 등 10개 업종에 대하여 차별화된 평가기준 적용
    - ※ 나머지 업종은 제조업/서비스업으로 나누어 공통기준 적용
- ▶ 시행일 : 2011년 4월

## 9.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환경부 화학물질과 (☎ 02-2110-7962)

■ 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취급제한 규제가 2011년 6월 1일부터 12가지 물질에 대해 시행됩니다.

- 새로이 규제가 시행되는 물질은 납, 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08.5.22일 지정·고시)이며,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이 물질들에 대한 영업허가·수입허가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취급하셔야 합니다.

※ 납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및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한 범위 확대

### <규제 시행 취급제한물질 목록>

연번	종 전	변 경 후
1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2	메틸브로마이드	메틸브로마이드
3	사염화탄소	사염화탄소
4	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 주석화합물	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 주석화합물
5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6	노닐페놀	노닐페놀
7	백석면	백석면
8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납	납
11	-	카드뮴
12	-	크로뮴(6+) 화합물

☞ 취급제한 ;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 ▶ 추진배경 : 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취급제한 규제가 2011.6.1일부터 12가지 물질에 대해 시행
- ▶ 주요내용
  - ① 12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 시행
    - '11.6.1일부터 납, 카드뮴, 크로뮴 화합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시행
    - ※ 납의 경우 취급제한 범위 확대
- ▶ 시행일 : 2011년 6월 1일

## 10.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 제도」 시행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2-2110-6846)

환경부 생활하수과 (☎ 02-2110-6891)

▣ 지금까지의 산업폐수관리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37종)·관리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속히 증가하여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 약 246,000종, 국내는 4만 여종 유통, 매년 신규로 400여종이 수입·제조

- 현행 BOD 등 이화학기준을 만족시키는 방류수에서도 물벼룩 등이 죽는 경우가 있어 소하천 등의 생태적 손상이 우려됩니다.

▣ 따라서,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 관리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TU)」을 도입하였습니다.

- '11. 1. 1일부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1~2종)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 생태독성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www.biowet.or.kr](http://www.biowet.or.kr))

##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신규 유해화학물질에 개별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산업폐수의 독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도입

▶ 주요내용

①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및 1~2종 사업장에 적용 (3~5종 : '12년부터 시행)

※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다량 사용하는 35개 업종대상. '11년부터 단계적 적용

※ 35개 업종의 폐수가 유입되고 1일 하수처리용량 500m<sup>3</sup>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

② 규모별·지역별 적용기준 및 시기

구분	지역	기준(이하)	적용시기
공공 하·폐수 종말처리장		TU 1	2011. 1. 1부터
1, 2종 사업장	청정	TU 1	
	가, 나, 특례	TU 2	
3, 4, 5종 사업장	청정	TU 2	2012. 1. 1부터
		TU 1	2016. 1. 1부터
	가, 나, 특례	TU 2	2012. 1. 1부터

③ 부과금 및 행정처분

- “생태독성”은 기본 및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이 아니며,

- 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시 위반횟수가 2회차 이상인 경우 1단계 낮은 차수의 처분기준을 적용

▶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 11.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환경부 유역총량과 (☎ 02-2110-7641)

■ 1단계 총량제에서는('04~'10)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BOD로 한정하였으나, 2단계('11~'15) 총량제 부터는 총인(T-P)을 추가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 지속적인 4대강 수질개선대책 추진으로 공공수역의 BOD농도는 감소하였으나 조류발생 및 유기물질 자체생산의 제한 인자인 총인의 오염도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조류발생 조건에는 수온·각종 영양염류·유속·일조량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총인」이 조류성장의 제한인자로 작용하므로 유기물질의 자체생산을 제어할 수 있는 「총인」관리가 필요합니다.
- 총인이 관리대상 물질에 추가됨에 따라 2단계 총량제가 종료되는 '15년에는 다음과 같이 총인 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영산강수계 : 0.238mg/L ('04년) ⇒ 0.130mg/L ('15년)
  - 섬진강수계 : 0.068mg/L ('04년) ⇒ 0.042mg/L ('15년)
  - 금강수계 : 0.020mg/L ('04년) ⇒ 0.018mg/L ('15년)
  - 낙동강수계 : 0.119mg/L ('04년) ⇒ 0.074mg/L ('15년)

### 〈2단계 총량제부터 총인도 관리대상 물질로 포함〉

- ▶ 추진배경 : BOD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류 발생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 문제 해결 및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인도 관리대상 물질에 포함하여 관리
- ▶ 주요내용
  - ① '11년부터 영산강·섬진강, 금강, 낙동강 수계에 적용
    - ※ 한강 수계의 경우 의무제로 전환되는 '13년부터 적용
  - ② 농업오염원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개발 및 토지이용 유도
  - ③ 인 식감에 따라 조류 및 유기물질 삭감효과 기대
- ▶ 시행일 : 2011년 1월

## 12.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환경부 유역총량과 (☎ 02-2110-7641)

-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실시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 대학, 국립 대학병원·치과병원 등 770여개 기관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목표관리를 받게 됩니다.
- 대상기관은 매년 12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축 목표·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등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환경부장관 고시)\*

\* 2010.12월 지침 제정·고시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 ▶ 추진배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
- ▶ 주요내용
  -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70여개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 ②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행계획 제출, 적절성 검토(환경부)
  - ③ 매년 3월말까지 이행연도 감축실적에 대한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실적 평가(환경부 등)
  - ④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기대
- ▶ 시행일 : 2011년 1월

### 13.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환경부 온실가스관리팀 (☎ 02-3679-5072)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정부(부문별 관장기관\*)에서는 매년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목표관리를 실시합니다.

\* 부문별 관장기관 : 농업·축산분야(농림수산식품부), 산업·발전분야(지식경제부), 폐기물분야(환경부), 건물·교통분야(국토해양부)

- 부문별 관장기관에서는 매년 6월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매년 9월까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후 그 실적을 관리하게 됩니다.

- 다만 최초 관리업체는 2010년 9월에 지정·고시되었으나 관리업체에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하여 2011년도 목표 설정은 유예하였습니다.

- 2011년부터 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다음연도 3월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지침(환경부장관 고시) \*

\* 2010.12월 지침 제정·고시

#### 〈관리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 ▶ 추진배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하여 관리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시행
- ▶ 주요내용
  - ①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목표관리 시행
  - ② 매년 6월까지 관리업체를 지정, 9월까지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설정
  - ③ 매년 12월까지 목표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다음연도 3월까지 이행실적을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출
  - ④ 이행실적에 대한 관장기관 평가
- ▶ 시행일 : 2011년 1월

## 14.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 02-2110-6790)

-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지역여건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악취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등 당초 지정요건이 해소된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의 규제와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 2개 이상의 악취배출사업장에서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하도록 하여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 악취방지계획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악취 배출원 관리강화〉

- ▶ 추진배경 :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체감 환경질 개선
- ▶ 주요내용
  - ①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규정 추가
  - ② 악취관리지역 지정취소(해제) 근거 마련
  - ③ 악취관리지역외 지역의 악취배출원 관리 강화
  - ④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 규정 신설
  - ⑤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
  - ⑥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시 법적 신청 서류 간소화
- ▶ 시행일 : 2011년 2월 5일

## 15.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환경부 수도정책과 (☎ 02-2110-7662)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부터 납·비소 등 유해물질 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됩니다.

- 물에 접촉하여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제조·수입업체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 오는 5.26일부터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2011.5.25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6개월간(2011.11.25)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 인증 방법·절차,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11.5월)할 예정입니다.

###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 추진배경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시행, 유해물질 용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주요내용

①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받아야 함

② 인증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수입·공급·판매 및 사용이 금지됨

▶ 시행일 : 2011년 5월 26일

## 16.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제조업체 공표 의무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2-2110-7685~6)

-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는 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11.3.23일부터 수시로 공개됩니다.
-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을 공표하여야 하며,
- 환경부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도별 위반제품 및 업체를 수시로 공개합니다.
- 아울러,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그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가 의무화됩니다.

###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업체 공표 의무화〉

- ▶ 추진배경 : 보다 안전한 먹는 샘물 공급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 ▶ 주요내용
  -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체에 대하여 3년간 폐기물부담금 50%를 감면
  - ① 시·도지사는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이 공표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②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에 시·도지사는 회수·폐기명령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제조업자는 이행완료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 시행일 : 2011년 3월 23일

## 17.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환경부 자연자원과 (☎ 02-2110-6761)

- '10.11.17일부터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내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숙박시설은 자연공원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 가족호텔, 전통호텔 등)로 한정하고 규모는 해안지역 50실 이상(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섬지역 30실 이상(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건축물 높이 9m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요청시에 평가서류(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환경부 고시 제2010-156호, 2010.11.17)를 첨부하여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 ▶ 추진배경 :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내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주요내용(허용기준)
  - ①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 가족호텔, 전통호텔 등)로 한정
  - ② 규모는 해안지역 50실 이상(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섬지역 30실 이상(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
  - ③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건축물높이 9m 이하로 정함
- ▶ 시행일 : 2010년 11월 17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관계부서
1.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신 규>	○ 환경성 석면노출로 원발성 악성 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치료비, 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	석면피해구제법 (‘11.1.1.)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7689)
2.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45~150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체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22.5~75원) <b>폐기물부담금의 중소기업 제품 제조자에 대한 부담 완화</b>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1~’13.12.3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6)
3.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 종량제봉투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등 대책 강구	○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 도입 - 위조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특허 등)을 사용 - 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 - 봉투제작 시 담당자 임의로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총량 관리가 가능한 기술사용·일련번호, 제작일, 제작시간을 봉투 겉면에 표시 <b>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내용</b>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11.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6929)
4. 분리배출 표시 도안 변경	○ 분리배출 표시 도안 - 12종(종이, 종이팩, 유리, 캔류 2종, 플라스틱류 7종) - 한글, 영문 혼용 - 도안색상 없음 - 표시위치 정면, 측면	○ 분리배출 표시 도안 - 7종(종이, 종이팩, 유리, 캔류 1종, 플라스틱류 3종) - 한글표시(세부재질만 영문) - 컬러인쇄시 도안 색상 도입(7종) - 표시위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b>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b>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11.1.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49)
5. 다중이용시설 중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의 적용 대상 면적 확대	○ 다중이용시설 중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적용대상은 연면적 860㎡이상의 시설	○ 다중이용시설 중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의 적용대상 연면적 기준이 860㎡이상에서 430㎡이상으로 확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부칙 (2011.1.1.)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90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관계부서
6. 제작·수입 철도 차량 소음 권고기준 시행	<신규>	○ 기관차, 디젤동차 등 제작·수입 철도차량에 대하여 정차소음, 주행소음 권고기준을 제정하여 시행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11.1.1.)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6812)
7.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신설	○ 먹는물 수질기준(수돗물 57개 항목) 중 납, 비소, 망간 항목 기준강화,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항목 조정, 1,4-다이옥산 항목 신설	○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신설 - (납) “0.05mg/L” 에서 “0.01mg/L”로 강화 - (비소) “0.05mg/L” 에서 “0.01mg/L(샘물의 경우 0.05mg/L)”로 강화 - (망간) 수돗물에 한하여 “0.3mg/L(샘물 미적용)”에서 “0.05mg/L(샘물 미적용)”로 강화 - (6가크롬) “6가크롬”은 “크롬”으로 항목이 조정 되고, 기준은 0.05mg/L로 현행과 동일 - (1,4-다이옥산) 새로이 신설 (0.05mg/L)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11.1.1.)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75)
8.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 기업 규모·업종과 관계 없이 동일한 평가기준 적용	○ 대기업, 중소기업 평가기준 차별화 ○ 전기·전자, 기계·자동차, 금융, 숙박 등 10개 업종에 대하여 차별화된 평가기준 적용 (나머지 업종에 대하여는 공통기준 적용)	녹색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 (11.4)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02-2110-6681)
9.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 10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 시행  ※규제시행 취급제한물질 목록	○ 12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 시행 - 11.6.1.부터 납, 카드뮴, 크로뮴 화합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시행  ※납의 경우 취급제한 범위 확대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11.6.1.)
			환경부 화학물질과 (02-2110-7962)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관계부서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취급제한물질</th> </tr> </thead> <tbody> <tr><td>1</td><td>말라카이트 그린 염류</td></tr> <tr><td>2</td><td>메틸브로마이드</td></tr> <tr><td>3</td><td>사염화탄소</td></tr> <tr><td>4</td><td>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 주석화합물</td></tr> <tr><td>5</td><td>폼알데하이드</td></tr> <tr><td>6</td><td>노닐페놀</td></tr> <tr><td>7</td><td>백석면</td></tr> <tr><td>8</td><td>트리클로로에틸렌</td></tr> <tr><td>9</td><td>테트라클로로에틸렌</td></tr> <tr><td>10</td><td>납</td></tr> </tbody> </table>	연번	취급제한물질	1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2	메틸브로마이드	3	사염화탄소	4	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 주석화합물	5	폼알데하이드	6	노닐페놀	7	백석면	8	트리클로로에틸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납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취급제한물질</th> </tr> </thead> <tbody> <tr><td>1</td><td>말라카이트 그린 염류</td></tr> <tr><td>2</td><td>메틸브로마이드</td></tr> <tr><td>3</td><td>사염화탄소</td></tr> <tr><td>4</td><td>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 주석화합물</td></tr> <tr><td>5</td><td>폼알데하이드</td></tr> <tr><td>6</td><td>노닐페놀</td></tr> <tr><td>7</td><td>백석면</td></tr> <tr><td>8</td><td>트리클로로에틸렌</td></tr> <tr><td>9</td><td>테트라클로로에틸렌</td></tr> <tr><td>10</td><td>납</td></tr> <tr><td>11</td><td>카드뮴</td></tr> <tr><td>12</td><td>크로뮴(6+) 화합물</td></tr> </tbody> </table> <p>☞ <b>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b></p>	연번	취급제한물질	1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2	메틸브로마이드	3	사염화탄소	4	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 주석화합물	5	폼알데하이드	6	노닐페놀	7	백석면	8	트리클로로에틸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납	11	카드뮴	12	크로뮴(6+) 화합물	
연번	취급제한물질																																																		
1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2	메틸브로마이드																																																		
3	사염화탄소																																																		
4	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 주석화합물																																																		
5	폼알데하이드																																																		
6	노닐페놀																																																		
7	백석면																																																		
8	트리클로로에틸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납																																																		
연번	취급제한물질																																																		
1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2	메틸브로마이드																																																		
3	사염화탄소																																																		
4	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 주석화합물																																																		
5	폼알데하이드																																																		
6	노닐페놀																																																		
7	백석면																																																		
8	트리클로로에틸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납																																																		
11	카드뮴																																																		
12	크로뮴(6+) 화합물																																																		
10.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 BOD 등 이화화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방류수수질기준 및 개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관리	○ 미지의 유해물질에 의한 산업폐수 통합독성을 살아있는 생물체인 물벼룩으로 시험분석하는 “생태독성(TU)” 기준을 도입 설정·관리 ☞ <b>생태독성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 (www.biowet.or.kr)</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11.1.1.)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2-2110-6846) 생활하수과 (02-2110-6891)																																																
11. 2단계 총량제부터 총인 관리대상 물질에 포함	○ 1단계 총량제에서는 (04~10) 관리대상 오염 물질을 BOD로 한정	○ 2단계(11~15) 총량제부터는 총인(T-P)을 추가하여 관리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11.1.1.) 환경부 유역총량과 (02-2110-7641)																																																
12.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시행	<신규>	○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 <b>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환경부장관 고시)</b>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11.1월) 환경부 온실가스 관리팀 (02-3679-5080)																																																
13.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신규>	○ 관리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관리 ☞ <b>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장관 고시)</b>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11.1월) 환경부 온실가스 관리팀 (02-3679-508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관계부서
14. 악취방지법 개정 에 따른 악취 배출 원 관리강화	<신 설>	○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이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 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 을 권고	악취방지법 (‘11.2.5.)
	<신 설>	○ 악취관리지역 지정사유가 해소 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환경부 대기관리과 (02-2110-6790)
	<신 설>	○ 악취관리지역 외에서 악취 민원 이 1년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3회이상 초과할 경우 신 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신 설>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 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 하여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 공공악취처리시설의 관리 및 악 취배출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5년마다 기술진단 실시	
	○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 여 제출	○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악취방지 계획 제출 면제	
15. 위생안전기준 인 증 시행	<신 규>	○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적합여부 를 인증 받아야 함	수도법 (‘11.5.26.)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7662)
16. 법령위반업체 공 표의무화 신설		○ 시·도지사가 부적합 제품(먹는 샘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 하는 즉시 회수·폐기를 의무적 으로 명령하도록 하는 기준 및 절차 마련	먹는물관리법 (‘11.3.23.)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7686)
17.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에 숙박시설 설치 허용	○ 공원 자연환경지구내에 숙박시설 설치 금지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 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고시(공원 자연환경지구내 숙박시설의 입 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 2010-156호)에 따라 입지적정성 평가를 받아 숙박시설 설치 가능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10.11.17.)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61)